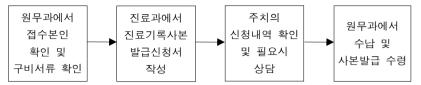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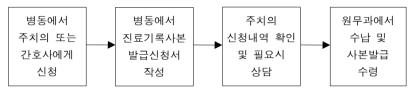
W-12.1(3) 의무기록 사본발급

● 사본발급절차

외래



입원



영상자료



- 1.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: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 등)
- 2. 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신청하는 경우
 - 1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 - 2) 친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- 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)

3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

- 1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2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: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)
- 3)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제외)
- 사본 발급 내역은 발급이력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.
- 타 의료기관에서 사본을 요청 경우 : 환자 보호자 동의 필수
- 법령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제출의 경우 :소속기관장 공문, 사원증제시
- 본인이외의 자에 대한 **열람 및 사본발급 금지** :

사생활보호 요청 해지 시까지 (법으로 정해진 경우 제외)